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72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상훈 · 백종현 · 권영진
성일종 · 윤재옥 · 강대식
박성민 · 고동진 · 이현승
박충권 · 엄태영 · 김재섭
김선교 · 최보윤 · 최은석
이양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4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상호저축은행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상호저축은행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호저축은행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상호저축은행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상호저축은행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상호저축은행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상호저축은행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상호저축은행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3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
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
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
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

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33조의7(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8(관리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35조의3제1항 중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제4호”를 “제4호, 제29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33조의8제1항제1호·제2호·제3호”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3조의7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33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18. 제3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3조의3(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 회사의 설립) ①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4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상호저축은행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p> <p><u>1. 상호저축은행</u></p> <p><u>2. 중앙회</u></p> <p><u>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u></p> <p><u>② 관리회사는 상호저축은행등의 출자로 설립한다.</u></p> <p><u>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신 설>

제3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호저축은행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 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상호저축은행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입(受任)
5. 상호저축은행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입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상호저축은행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상호저축은행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상호저축은행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신 설>

제3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신 설>

<신 설>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 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33조의7(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8(관리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⑤ (생략)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3조의7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33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18. 제3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